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92
----------	------

발의연월일 : 2010. 9. 9.

발 의 자 : 이용섭 · 박영선 · 정희수
백재현 · 김진표 · 이미경
고승덕 · 홍영표 · 박주선
김진애 · 유성엽 · 김재윤
전혜숙 · 박선숙 · 조영택
의원(15인)

제안이유

정부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각종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교통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해에 교통안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사업자가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탈착하고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교체하거나,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교체비용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정부가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유가 및 수요 감소로 유례 없는 경영난에 봉착하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안전장치 부착비용을 사업자에게 전액 부담시킨 것은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것임.

개정안은 운수업계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도한 교통안전시설 부착비용을 경감시키고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사업자에게 교통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설치비용을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교통안전장치 부착비용으로 인해 버스, 택시 및 화물 등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서민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교통안전장치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① ---- ----- ----- ----- ----- -.</p> <p>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지원할 수 있다.</p> <p>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p> <p>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p>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정부가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영업용자동차에 장착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 예산지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1대당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비용

- 버스와 화물 영업용자동차 : 30만원(설치비 5만원, 디지털운행기록 장치비 25만원)
- 택시자동차 : 70만원(설치비 5만원,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치비 25만원, 요금계량기 40만원)
 - 택시의 경우 운행기록계와 요금계량기가 연동되어 있어 기존 아날로그운행기록계를 디지털운행기록계로 전환시 요금계량기도 교체하여야 함.

□ 국비지원 비율은 총 설치비용의 40%로 가정

-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차종별로 각연도 설치대수를 다음과 같이 가정

<연도별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치 설치대수>

단위 : 대

	합계	2011	2012	2013
소계	700,121 (100%)	210,036 (33%)	210,036 (33%)	280,048 (34%)
택시	254,500 (100%)	76,350 (30%)	76,350 (30%)	101,800 (40%)
버스	101,773 (100%)	50,887 (50%)	50,887 (50%)	-
화물차	343,848 (100%)	103,154 (30%)	103,154 (30%)	137,539 (40%)

자료 : 국토해양부(택시는 '10년 3월, 버스와 화물차는 '10년 6월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지출비용은 약 1,247억원으로 추정됨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지원비용	택시	214	214	285	-	-	713
	버스	61	61	-	-	-	122
	화물차	124	124	165	-	-	413
□ 총 비용		399	399	450	-	-	1,247

4. 부대의견

1대당 디지털은행기록계 설치비용 지원비율에 따라 비용추계가 달라질 수 있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이용섭의원실 이준호비서관
연락처	788-2670